

부속서 14-가 모범절차규칙

적용

1. 이 규칙은 제14.9조에 따라 제정되고,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 적용된다.

정의

2. 이 부속서의 목적상,

제소 당사국이란 제14.6조에 따라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당사국을 말한다.

피소 당사국이란 소가 제기된 당사국을 말한다. 그리고

중재패널이란 제14.7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패널을 말한다.

3. 이 규칙에서 언급되는 조항은 이 장의 해당 조항을 말한다.

패널에 대한 위임 사항

4. 패널 설치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제14.6조에 따라 중재패널의 설치 요청에서 언급된 사안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이유와 함께 사실 및/또는 법적 조사결과를 작성하고 만약에 있다면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에 대한 권고를 하며, 아울러 제14.11조 및 제14.12조에 언급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5. 양 당사국은 마지막 패널위원이 지명된 직후, 합의된 위임사항을 패널에게 신속히 전달한다.

6. 제소 당사국이 어떠한 사안이 혜택을 무효화 또는 침해하였다고 주장하

는 경우, 이를 위임사항에 적시한다.

서면의견서 및 그 밖의 문서

7. 각 당사국은 4부 이상의 의견서 사본을 패널에게, 그리고 1부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8. 제소 당사국은 최초 서면의견서를 마지막 패널위원이 지명된 후 15일 이내에 피소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피소 당사국은 자국의 의견서를 제소 당사국의 최초 의견서 접수 이후 30일 이내에 제소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9. 제7항 또는 제8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패널 절차와 관련된 요청·통보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이의 사본을 모사전송·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전송 방법으로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10. 당사국은 패널 절차와 관련된 요청, 통보, 의견서 또는 그 밖의 서류상의 경미한 오류를, 변경 내용을 명백하게 표시하는 새로운 문서를 전달함으로써 언제든지 정정할 수 있다.

패널의 운영

11. 패널 의장은 모든 패널 회의를 주재한다. 패널은 의장에게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2. 이 규칙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패널은 전화·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연계를 포함하는 모든 수단으로 그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13. 패널위원만이 패널 심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분쟁해결절차에 필요한 인원수에 해당하는 보조원·통역사 또는 번역가 또는 법정 속기사(지정된 서기)를 고용하고 패널 심의중 이들의 참석을 허용할 수 있다. 패널위원 및 패널에 의하여 고용된 자들은 패널 절차에 대한 정보가 이미 대중에게 이용가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14.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패널절차에 적용되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고, 패널 절차에서 필요한 그 밖의 절차적 또는 행정적인 조정을 할 수 있다.

심리

15. 패널 의장은 양 당사국 및 다른 패널위원과 협의하여 심리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나서 이를 서면으로 양 당사국에 통보한다.

16. 패널 개최 장소는 양 당사국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합의되지 아니한 경우, 패널은 제소 당사국의 영역에서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하며 그 이후 양 당사국 영역에서 교대로 개최한다.

17. 패널은 제소 당사국 및 피소 당사국에게 주장·항변 및 재항변을 위하여 동일한 시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한다.

패널의 결정

18. 패널은 총의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패널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다수결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정보의 이용가능성

19. 개인 사생활·국영 또는 민간의 특정 기업에 대한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필수 비밀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 당사국은 의견서에 포함되거나 또는 패널 심리에 제출된 특정 정보를 비밀유지 취급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제19호에 따라 비밀로 지정하여 패널에게 제출한 정보를 비밀로 취급한다.

21. 각 당사국은 패널절차에 관련된 자국의 전문가·통역사·번역가·법원 서기(지정된 속기사) 및 그 밖의 개인이 패널 절차의 비밀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취한다.

보수 및 비용의 지불

22. 패널은 양 당사국과 합의하여 패널 절차 진행과정에서 고용한 보조원, 법원 서기(지정된 속기사) 또는 그 밖의 개인에게 지불된 것을 포함하여, 그 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일반 비용의 기록을 유지하고 최종 결산보고를 한다.